

행정자치부

훈계·주의요구

제 목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제조업 용도변경 허가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화천군, 평창군

관 련 자 ① 화천군 ○○○○과(전 ○○○○과) ○○○○ ○○○

② 평창군 ○○○○과(전 ○○○○과) 지방○○○○(전 지방○○○○) ○○○

내 용

화천군 ○○○○과 ○○○○ ○○○은 2011. 9. 15.부터 2015. 2. 9.까지 ○○○○○과(현, ○○○○○○소)에 근무하면서 (구)○○○○원의 용도변경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서면) 업무의 실무담당자였으며, 평창군 ○○○○과 지방○○○○ ○○○은 2008. 8. 7.부터 2013. 5. 6.까지 ○○○○과에 근무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¹⁵⁹⁾의 상류·하류 일정지역¹⁶⁰⁾(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집

159)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160) 공장설립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¹⁶¹⁾은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안¹⁶²⁾을 2010. 5. 25.에 공포(시행 2010. 11. 26.) 후,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개정하여 2010. 11. 26. 공포·시행하였고, 2012. 11. 21.에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227호)하였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설립 승인지역”은 「수도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별도의 지형도면 고시 절차 없이 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장규제지역은 「수도법」 시행일인 2010. 11. 26.에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과-000(2014. 1. 8.)]

1. 화천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제조업 용도변경 승인

①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제조업 용도변경 승인 부적정

화천군 ○○○○과는 2012. 5. 2.에 ○○○○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경계에 인접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인 ○○군 ○○읍 ○○리 000-0번지 일원의 (구)○○○○원(병원)의 용도변경 및 증축협의를 접수받아 2012. 5. 3.부터 2012. 5. 15.까지 ○○○○과(현, ○○○○○○소) 등으로부터 민원실무종합심의(서면)를 받고, 2012. 5. 30.에 용도(아파트형 공장)변경 및 증축협의 내용을 통보하였

16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의 등록의무 대상(공장건축면적500㎡)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설립이 제한됨.

16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 추진 경위

구분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8. 6. 13.~7. 2.	2010. 9. 28.~10. 15.	2010. 9. 28.~10. 15.
공포·시행	2010. 5. 25. (2010. 11. 26.시행)	2010. 11. 26.	2010. 11. 29.

고, 2012. 6. 1.에 착공하여 2012. 8. 9.에 사용승인 하였다.

이에 따라, ○○○○과는 「수도법」을 위반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공장)으로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에서의 공장설립을 제한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저해하였다.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용도변경(공장) 협의 현황>

구분	신청일	허가일	당초용도	변경용도	주소	비고
용도변경협의	2012.5.2	2012.5.30	병원	공장 (아파트형)	○○군 ○○읍 ○○ 리 000-0,000-0번지	건축주:○○군 ○○○○과

②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제조업 용도변경 협의 회신 부적정

화천군 ○○○○○소는 「수도법」 관련업무의 주관부서로서 ○○○○과에서 ○○○○과로 2012. 5. 2.에 (구)○○○○원(병원)의 용도변경 및 증축협의를 접수받아 2012. 5. 3.부터 2012. 5. 15.까지 진행한 서면 민원실무종합심의에서 민원명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부당하게 변경 및 증축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에서의 공장설립을 제한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저해하였다.

위와 같이 화천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용도변경 승인[병원→공장(아파트형공장)]과 관련하여 ○○○○ ○○○은 협의부서의 실무책임이 있다.

2. 평창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제조업 용도변경 승인

평창군 ○○○○과는 2012. 7. 5.에 민원인 ○○○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0.25km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인 ○○군 ○○읍 ○○리 000-0번지 일원의 숙박시설(여관) 및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공장

(식품공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건을 접수하여, 2012. 8. 2. 용도변경허가 처리하고,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2012. 10. 10.) 및 사용승인(2012. 10. 17.)하였다.

이에 따라, ○○○○과는 「수도법」을 위반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공장)으로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에서의 공장설립을 제한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저해하였다.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용도변경(제조업) 허가 현황>

구분	신청일	허가일	당초용도	변경용도	주소	비고
용도변경허가	2012.7.5	2012.8.2	숙박시설(여관) 일반음식점	공장 (식품공장)	○○군 ○○읍 ○○리 000-0번지	건축주 : ○○○

위와 같이 화천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용도변경 승인[숙박시설(여관) 및 일반음식점→공장(식품공장)]과 관련하여 지방○○○○ ○○○은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 화천군수, 평창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수도법」을 위반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 제조업 시설, 공장의 신축 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공장등록 허가 및 신고 등이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고, 「수도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승인된 사업장(공장)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